

# 회 람

【학사관리과】

교내) 3015

담당 : 김주현(planzoo@inje.ac.kr)

학사 제2017-0542호

2017. 9. 14.

수 신 : 전체 단과대학장

제 목 : 공인결석 처리 관련 안내

1.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공인결석 문의가 많아 아래와 같이 학사운영규정을 안내하오니 학사지도 및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.

가. 제18조(공인결석) 제1항 제8호의 2 : 졸업예정자(마지막 학기 등록자)의 조기취업(인턴, 국비교육 등 포함)으로 인한 결석 : 해당기간

※ **졸업예정자 : 수강신청학점 + 취득학점(세부전공 포함)외 모든 졸업 요건에 충족하는 자(8학기(마지막 학기) 등록으로만 판단하면 안됨)**

나. 제32조(성적산출) 제3항 : 기말고사 불응 시에는 당해 교과목 성적은 인정되지 아니한다. 다만, 제18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29조, 제30조 또는 시험 외 성적평가 방법으로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.

2. 공인결석 인정 범위 및 증빙서류

가. 성적증명서(졸업예정자 확인용)

나. 4대 보험 가입 확인서(가입기간 명기)

다. 재직(계약) 증명서(재직기간 명기)

라. 국비지원교육 이수 관련 증빙서류(이수 기간 명기)

마. 공무원 등 -> 관련 증빙서류(재직기간 명기)

3. 유의사항

가. 공인결석 인정은 퇴직 후 또는 학기말까지 재직시는 학기말에 신청하고 증빙서류의 기간을 확인하여 승인해야 합니다.

나. 교육부 학사관련 기록물 보관 기준에 따라 학사관리 바랍니다.

1) 학점 및 성적관리 : 10년

2) 학생출결관리 : 3년. 끝.

교 무 처 장 「직인생략」